

대전광역시의회 공고 제2019 - 55호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조례」 제정을 위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8일

대전광역시의회의장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의 학업중단을 예방하기 위하여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함(안 제2조).
- 나. 대전광역시교육감은 상담·치유·학습 지원 프로그램 등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을 지원할 수 있음을 정함(안 제3조).
- 다. 대전광역시교육감은 Wee센터,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음을 정함(안 제4조).

3. 의견제출

가.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15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의회의회장(참조 : 교육전문위원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기재)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5242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대전광역시의회 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실

(전화 042-270-5243, FAX 042-270-5249, E-mail : papermoon@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4. 제정 조례안 : 붙임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의 학업중단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이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에 따라 위탁 받은 기관 중 학업을 중단할 위기에 있거나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과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전광역시교육감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상담·치유·학습 지원 프로그램 사업
2. 진로·직업·문화 프로그램 사업
3. 교직원 역량강화 프로그램 사업
4. 대안교육 교육과정 개발 프로그램 사업
5. 그 밖에 학생의 학업중단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협력체계 구축) 대전광역시교육감은 학생의 학업중단을 예방하기 위하여 Wee센터,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 초·중등교육법

제28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학생들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일수와 교육과정을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등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성격장애나 지적(知的) 기능의 저하 등으로 인하여 학습에 제약을 받는 학생 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학생

2. 학업 중단 학생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의 체계적 실시를 위하여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정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습부진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교재와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⑤ 교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학습부진아 등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관련 연수를 이수하여야 하고, 교육감은 이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⑥ 학교의 장은 학업 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 중단의 의사를 밝힌 학생에게 학업 중단에 대하여 숙려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그 숙려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학생에 대한 판단기준, 숙려기간, 숙려기간 동안의 출석일수 인정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및 시책)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학습부진아 등(이하 "학습부진아등"이라 한다)에 대한 판별은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의 장이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습부진아등에 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수업일수의 범위에서 체험학습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감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학습부진아등이 밀집한 학교에 대하여 교육·복지·문화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
2. 학습부진아등에 대하여 진단·상담·치유·학습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사업 대상학교의 선정기준, 대상학생의 선정절차 등 지원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삭제

⑥ 삭제

⑦ 교육감은 교원이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학습부진아등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연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연수의 목적 및 내용
2. 연수의 개설 및 운영 기관
3. 연수의 종류
4. 교육과정별 연수 대상 및 인원
5. 연수의 이수기준
6. 그 밖에 연수의 운영 및 연수비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

⑧ 제7항에 따른 연수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습부진아등에 대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2. 학습부진아등의 판별·진단·지도·예방 및 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
3. 학습부진아등에 대한 지도 우수 사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습부진아등의 학습능력 향상에 필요한 사항

비 용 추 계 서

1. 의안명 :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조례안

2.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비용 발생 요인 :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보조금 지원

나. 관련 조문

제3조(지원) 대전광역시교육감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상담·치유·학습 지원 프로그램 사업
2. 진로·직업·문화 프로그램 사업
3. 교직원 역량강화 프로그램 사업
4. 대안교육 교육과정 개발 프로그램 사업
5. 그 밖에 학생의 학업중단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3. 비용추계의 전제와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1) 현재 우리교육청은 「대안교육기관의 지정 및 학생위탁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위탁교육기관에 대해 위탁학생수와 위탁기간 등을 고려하여 위탁교육경비를 보조함.
- 2) 위탁교육경비는 학생당 1일 표준 위탁교육경비와 학생 교육실적에 따라 기관별로 보조함.
- 3) 학생당 1일 표준 위탁경비는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결정함.
- 4) 위탁교육경비와 별도로 위탁교육 준비에 따른 기본운영비를 추가적으로 보조함.

나. 연도별 비용추계표 : (붙임)

다. 재원조달방법 : 교육부 특별교부금 및 시 자체재원

4. 기획예산과와 협의하였음

5. 그밖에 비용추계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없음

6. 작성자: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 이현준(042-616-8471)

[붙임] 연도별 위탁교육경비 보조금 비용 추계표

(단위: 원)

연도 \ 구분	기본운영비	학생 교육실적에 따른 교육경비	계
2019년	10,000,000	18,000×20,460일(교육 일수)	408,280,000
2020년	10,000,000	18,300×20,460일(교육 일수)	414,418,000
2021년	10,000,000	18,600×20,460일(교육 일수)	420,556,000
2022년	10,000,000	18,900×20,460일(교육 일수)	426,694,000
2023년	10,000,000	19,200×20,460일(교육 일수)	432,832,000

※ 학생당 1일 표준 위탁경비는 2019년도 물가상률 약 1.64% 반영